



---

# 의정활동보고서

---



제269회 임시회(2014. 3. 20 ~ 4. 3)



경 상 북 도 의 회



##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주낙영 행정부지사와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상징하는 새 봄을 맞아 제26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3백만 도민의 여망과 성원 속에 출범한 제9대 의회는  
그동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골고루 잘 사는 균형 있는 정책 구현  
으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도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 아쉬움도 다소  
있었습니다.

제9대 도의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도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다가오는 6월 4일은 지역의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4년간 땀 흘린 노력의 결과를 지역민에게 평가받는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성숙된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맡은바 업무와 6. 4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도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닭 53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피해가 60억원을 넘어서는 등 물적·인적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피해 도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주요사업 현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도내에는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효율적인 산불감시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15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전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안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 차 례

I. 개 황	167
II. 의사일정	169
III. 의안처리	174
IV. 민원처리	176
V. 본회의 보고사항	178
VI. 5분 자유발언	198
□ 정영길 의원(농수산위원회)	198
□ 장세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201

## 부 록

□ 조례안(14건)	205
------------	-----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69회 임시회는 2014년 3월 20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4월 3일까지 15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7회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어서 도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나현아 의원이 “경상북도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관련”, “노인 복지 관련”,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며, 문화환경위원회 김명호 의원은 “정부 3.0 구상과 민주주의 실현 관련”, “한-캐나다 FTA 타결에 따른 도내 축산농가 지원대책”, “신도청시대 맞아 예천공항 재개항 관련”, “국립소방방재박물관 유치 관련”, “안동시 강남중학교 신설”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 광광섭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도내 교통약자 복지수준 제고”와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이시하 의원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 “도내 상수도 누수 관련”, “문경시 모전 119안전센터 설치”에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며,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은 “동해안발전 전략 관련”, “경북도의회 기능강화 관련”, “학교 비정규직 관련”, “경북

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 관련” 등에 관한 폭넓은 도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정영길 의원의 “경상북도 도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와 기획경제위원회 장세현 의원의 “교육환경 개선(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정책적 제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14건의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중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경상북도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용 의원, 전찬걸 의원, 김하수 의원, 송필각 의장 등 4명의 의원사직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장선거의 건”이 상정되어 바로 의장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선거결과 문경출신 이시하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어서 공식인 2개 위원회의 상임위원장 선거가 이어졌다.

선거결과 의회운영위원장에 포항출신 김희수 의원이, 문화환경위원장에 성주출신 박기진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포항출신 김말분 의원이 선임되었다.

이밖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 II. 의사일정

###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 다. 집회일시 : 2014년 3월 20일(목) 14:00

###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4년 3월 20일 ~ 4월 3일(15일간)
-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누계 81회)
  - 위원회

(단위: 건)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7	2	1	1	1	1	0	1	0	0
누 계	454	39	58	59	50	41	55	51	55	46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 3. 활 동

####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0(목)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li> <li>○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li> <li>○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li> <li>○ 휴회의 건</li> </ul> <input type="checkbox"/>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현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li> <li>○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li> <li>○ 광광섭 의원(농수산위원회)</li> <li>○ 이시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li> <li>○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li> </ul>	
4. 3(목) (제2차)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영길 의원(농수산위원회)</li> <li>○ 장세현 의원(기획경제위원회)</li> </ul>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li> <li>○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li> </ul>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li> <li>○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li> <li>○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이상용 의원 사직의 건</li> <li>○ 전찬걸 의원 사직의 건</li> <li>○ 김하수 의원 사직의 건</li> <li>○ 송필각 의원 사직의 건</li> <li>○ 의장 선거의 건</li> <li>○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li> <li>○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li> </ul>	

## 나. 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0(목) 10:4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input checked="" type="radio"/> 제269회·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4. 3(목) 13: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input checked="" type="radio"/>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0(목) 10:00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0(목) 10:00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촉진 조례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0(목) 16:00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0(목) 10:00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input type="radio"/>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input type="radio"/>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radio"/>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input type="radio"/>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교육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0(목) 16:00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input type="radio"/>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radio"/>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Ⅲ. 의안처리

(단위 : 건)

구 분	접수 (부의)	심의·의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18 (554)	17 (543)	15 (427)	1 (110)	(6)		(4)	1 (7)		
조 례 안	소 계	15 (342)	14 (333)	13 (242)	1 (85)	(6)		(3)	1 (6)	
	의회 제안	10 (170)	9 (162)	8 (124)	1 (39)			(2)	1 (5)	
	도지사 제출	4 (117)	4 (115)	4 (85)	(27)	(3)		(1)	(1)	
	교육감 제출	1 (55)	1 (55)	1 (33)	(19)	(3)				
규 칙 안	(5)	(5)	(5)							
예산·결산	(29)	(29)	(9)	(20)						
동의·승인	(45)	(45)	(43)	(2)						
건의안	(4)	(3)	(3)				(1)			
결의안	(37)	(36)	(33)	(3)				(1)		
기 타 안 (청원포함)	3 (92)	3 (92)	3 (92)							

※ ( )내는 제 9대 의회 누계임.

□ 상임위 계류중 안건(7)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 달 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1, 전찬걸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7, 황이주 의원 외 3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13. 4. 22, 배수향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유보)
- 경북북부권내 지방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13. 8. 13, 김명호 의원 외 12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3. 10, 장경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유보)

## IV. 민원처리

###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4		4	4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 2. 진 정

####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19)									
의 회 운 영	(2)									
기 획 경 제	(14)									
행 정 보건복지	(21)									
문 화 환 경	(8)									
농수산	(5)									
건 설 소 방	(64)									
교 육	(5)									
특 별 위원회										

※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송	
계	(119)	(119)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농 수 산						
건설소방						
교 육						
특별위원회						

※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 V.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 접수사항 : 15건(조례안)

제출·발의자 (접수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도지사 (2014. 3. 10)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기획경제 (2014.3.11)
이상용 의원 외 3인 (2014. 3. 10)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4.3.11)
도지사 (2014. 3. 10)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채옥주 의원 (2014. 3. 10)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 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 (2014.3.11)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경식 의원 (2014. 3. 10)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기홍 의원 (2014. 3. 10)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한창화 의원외 7인 (2014. 3. 10)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농수산 (2014.3.11)
강영석 의원외 14인 (2014. 3. 10)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장경식 의원 (2014. 3. 10)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자근 의원 (2014. 3. 10)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 (2014.3.11)
도교육감 (2014. 3. 7)	경상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2. 조례공포 사항 : 6건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4.2.1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14.2.24 (제3512호)
"	"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		2014.3. 6 (제3514호)
"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15호)
"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16호)
"	"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17호)
2014.2.25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 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4.2.27 (제3513호)

## 3. 의원 동정

소 속 위원회	성 명	사 직 서 제 출 일	사 직 허 가 일	사 직 사 유
교 육	추 재 천	'14. 3. 6	'14. 3. 6	• 6. 4 지방선거 입후보

※ 사직허가 근거 : 지방자치법 제77조(의원의 사직)

## 4. 위원회 활동 사항 : 해당없음

## 5. 기타 의정활동 사항

### 【도 단위 행사】

- 2월 대구·경북지역 발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4. 2. 26(수) 07:30
  - 장 소 : 대구은행 본점
  - 참 석 : 송필각 의장
  
- '14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교육 참석
  - 일 시 : 2014. 2. 26(수) 14:00
  - 장 소 : 안동 유교랜드
  - 참 석 : 김명호 의원
  
- 포항뿌리회 1주년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4. 2. 26(수) 18:00
  - 장 소 : 포항 필로스호텔
  - 참 석 : 김희수 의원
  
- 청소년 문제 치유를 위한 뇌교육·인성교육 업무협약식 참석
  - 일 시 : 2014. 2. 27.(목) 15:00
  - 장 소 : 경북지방경찰청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 부의장, 박태환 의원

- 제2회 환동해발전포럼 참석
  - 일 시 : 2014. 2. 27(목) 15:00
  - 장 소 : 포항시청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장경식 의원
  
- 동부경협 제14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4. 2. 28(금) 14:00
  - 장 소 : 포항 웨딩캐슬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장경식 의원
  
- 제95주년 3.1절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4. 3. 1(토) 10:00
  - 장 소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명호·이영식 의원
  
- 포항운하 준공식 및 영일군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4. 3. 1(토) 14:00
  - 장 소 : 포항운하관
  - 참 석 : 채옥주·장두욱 위원장, 장경식·장세현·  
김말분·김희수·이정호 의원
  
- 경북 해병전우회 총회 참석
  - 일 시 : 2014. 3. 1(토) 14:30
  - 장 소 : 예천청소년수련관
  - 참 석 : 도기욱 의원

- **경북도립대학교, 『2014년도 제18회 입학식』 참석**
  - 일 시 : 2014. 3. 3(월) 10:00
  - 장 소 : 예천군 경북도립대학교 문화체육관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정상진 위원장, 도기욱 의원
  
- **경북·전남 국회의원 동서화합포럼 참석**
  - 일 시 : 2014. 3. 3(월) 15:20
  - 장 소 :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 참 석 : 송필각 의장, 윤창욱·심정규·장영석 의원
  
- **영천축협 TMF 사료공장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4. 3. 4(화) 11:00
  - 장 소 : 영천축협 TMF 사료공장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제17회 경북도산업평화대상식 참석**
  - 일 시 : 2014. 3. 4(화) 14:00
  - 장 소 : 도청 회의실
  - 참 석 : 김희수 의원
  
- **제28회 경북경영자총협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4. 3. 5(수) 11:00
  - 장 소 : 구미 센츄리호텔
  - 참 석 : 윤창욱·심정규·장영석 의원

- **도내 체육현장 현장투어 참석**
  - 일 시 : 2014. 3. 5(수) 11:00
  - 장 소 : 의성컬링센터
  - 참 석 : 이왕식 의원
  
- **영천 에어로테크노밸리 조성 타당성 검토 및 항공전자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4. 3. 5(수) 13:00
  - 장 소 : 영천시청 회의실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개강식 참석**
  - 일 시 : 2014. 3. 5(수) 14:00
  - 장 소 : 구미시 산동면(경운대학교 벽강아트센터)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변우정 · 한창화 의원
  
- **김천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 일 시 : 2014. 3. 5(수) 14:00
  - 장 소 : 김천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나기보 · 배수향 의원
  
- **경산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4. 3. 5(수) 14:00
  - 장 소 : 경산시민회관
  - 참 석 : 김세호 · 김영식 · 김창숙 · 배한철 · 서정숙 · 윤성규 의원

- **칠곡 희망마을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4. 3. 5(수) 14:00
  - 장 소 : 칠곡군 왜관읍
  - 참 석 : 김희원 의원
  
- **경상북도 재향군인회 제55차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4. 3. 6(목) 11:00
  - 장 소 : 경주 켄싱턴 리조트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 **제5·6대 경북자율방법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4. 3. 6(목) 11:00
  - 장 소 : 성주 웨딩홀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기진 의원
  
- **청송군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4. 3. 6(목) 12:00
  - 장 소 : 청송군체육관
  - 참 석 : 김영기 의원
  
- **제15기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학 입학식 참석**
  - 일 시 : 2014. 3. 6(목) 14:00
  - 장 소 : 경운대학교
  - 참 석 : 윤창욱·심정규·장영석 의원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4. 3. 6(목) 14:0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장경식 의원
  
- 읍면동장 국·도정시책 교육 참석
  - 일 시 : 2014. 3. 6(목) 14:40
  - 장 소 : 군위 백송스페이스
  - 참 석 : 홍진규 의원
  
- 3대문화권사업(황악산 공원조성사업)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4. 3. 7(금) 14:00
  - 장 소 : 김천 직지사 일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나기보·배수향 의원
  
- 제6기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4. 3. 7(금) 16: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독도 관계자 합동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4. 3. 7(금) ~ 3. 8(토)
  - 장 소 : 경주 대명리조트
  - 참 석 : 장경식 의원

- 경상북도 청년유도회 선비문화포럼 참석
  - 일 시 : 2014. 3. 8(토) 10:00
  - 장 소 : 영덕군민회관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 2014 구미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소양교육 참석
  - 일 시 : 2014. 3. 11(화) 14:00
  - 장 소 : 경북새마을회관
  - 참 석 : 윤창욱·박태환·심정규·이태식·장영석 의원
  
- 경상북도 상반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식 참석
  - 일 시 : 2014. 3. 11.(화) 16:00
  - 장 소 : 경주시청
  - 참 석 : 이 달 의원
  
- 한의마을조성사업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4. 3. 12.(수) 14:00
  - 장 소 : 영천 마현산 일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3D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 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4. 3. 12(수) 14:00
  - 장 소 : 구미 금오테크노밸리
  - 참 석 : 송필각 의장, 윤창욱·김봉교·심정규·장영석 의원

- **해양바이오 R&D관련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4. 3. 13(목) 09:30
  - 장 소 :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제47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4. 3. 13(목) 11:00
  - 장 소 : 삼국유사문화회관
  - 참 석 : 홍진규 의원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영남대학교 교류협력 MOU체결 참석**
  - 일 시 : 2014. 3. 14(금) 10:30
  - 장 소 : 영남대 본관
  - 참 석 : 서정숙 의원
  
- **제48회 경상북도 건축사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4. 3. 14(금) 11:00
  - 장 소 : 구미 금오산호텔
  - 참 석 : 윤창욱·장영석 의원
  
- **죽장고로쇠축제 참석**
  - 일 시 : 2014. 3. 15(토) 11:00
  - 장 소 : 포항시 죽장면(서포중고교 운동장)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김희수 의원

- 경상북도 어린이집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4. 3. 15(토) 11:00
  - 장 소 : 칠곡 리베라웨딩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4. 3. 18(화) 14:30
  - 장 소 : 대전광역시의회
  - 참 석 : 송필각 의장
  
- 금호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준공식
  - 일 시 : 2014. 3. 18(화) 14:00
  - 장 소 : 영천 금호전통시장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방문(인증패 수여) 참석
  - 일 시 : 2014. 3. 18(화) 15:00
  - 장 소 : (주)한중(영천시)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시·군 단위 행사】**

- 포항시 새마을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4. 2. 26(수) 11:00
  - 장 소 : 포항 티파니웨딩
  - 참 석 : 김희수 의원

- **평화통일자문위원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4. 2. 26(수) 11:00
  - 장 소 : 경산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김창숙 의원
  
- **구미시 생활체육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4. 2. 26(수) 11:00
  - 장 소 : 구미시청 상황실
  - 참 석 : 윤창욱 의원
  
-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4. 2. 26(수) 13: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김말분 의원
  
-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4. 2. 26(수) 14:00
  - 장 소 : 청도군 매전면(옛 관하초등학교)
  - 참 석 : 김하수·박권현 의원
  
- **칠곡군민회관 리모델링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4. 2. 27(목) 10:30
  - 장 소 : 칠곡군민회관
  - 참 석 : 김희원 의원

-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2014년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4. 2. 27(목) 11:00
  - 장 소 : 문경 황제웨딩홀
  - 참 석 : 이경임 의원
  
- 한국지역사회협의회 포항지회 발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4. 2 27.(목) 18:30
  - 장 소 : 포항 목화예식장
  - 참 석 : 김원석 의원
  
- 죽도동 제6회 2월맞이 웃놀이대회 참석
  - 일 시 : 2014. 2. 28(금) 10:00
  - 장 소 : 포항시 (구)여성복지회관 강당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 상주한우협회 “2014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4. 2. 28(목) 11:00
  - 장 소 :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 참 석 : 강영석 의원
  
- 장학금기부자 명예의전당 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2. 28(금) 14:00
  - 장 소 : 포항시청 중앙홀
  - 참 석 : 이정호 의원

- 2014 울진대게외 붉은대게 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4. 2. 28(금) 14:00
  - 장 소 : 울진 후포항 한마음광장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황이주 의원
  
- 제20기 장수대학 및 시민대학원 개강식 참석
  - 일 시 : 2014. 2. 28(금) 14:00
  - 장 소 : 구미시 평생교육원 3층 대강당
  - 참 석 : 변우정 의원
  
- 제25회 영해 3.1 문화제 및 3.1절 기념식
  - 일 시 : 2014. 2. 28(금) ~ 3. 1(토)
  - 장 소 : 영덕군 영해면 일대
  - 참 석 : 김기홍 의원
  
- 영천시 제25회 금호민속축제 개최 참석
  - 일 시 : 2014. 3. 1.(토) 10:00
  - 장 소 : 금호초등학교
  - 참 석 : 김수용 위원장
  
- 95주년 3.1절 기념식 독립선언문 낭독
  - 일 시 : 2014. 3. 1.(토) 11:00
  - 장 소 : 구미 선산고등학교
  - 참 석 : 박태환 의원

- 95주년 3.1절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4. 3. 1(토) 11:00
  - 장 소 :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 참 석 : 김원석·김희수·한창화 의원
  
- 3·1절 만세운동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4. 3. 1(토) 11:30
  - 장 소 : 의성군 비안면 기념공원
  - 참 석 : 나현아 의원
  
-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점검 참석
  - 일 시 : 2014. 3. 3(월) 11:00
  - 장 소 : 봉화군
  - 참 석 : 권영만 의원
  
- 2014년 경산시생활체육교실 사업설명회 참석
  - 일 시 : 2014. 3. 3(월) 11:00
  - 장 소 : 경산시민회관 소회의실
  - 참 석 : 김세호 의원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민 공청회 참석
  - 일 시 : 2014. 3. 4(화) 14:00
  - 장 소 : 김천시청
  - 참 석 : 나기보·배수향 의원

- **군위 자치대학원 입학식 참석**
  - 일 시 : 2014. 3. 5(수) 10:00
  - 장 소 : 군위 부계면사무소
  - 참 석 : 홍진규 의원
  
- **남후면 계곡리 경로당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4. 3. 5(수) 11:00
  - 장 소 : 안동 남후면 계곡리 경로당
  - 참 석 : 이영식 의원
  
- **경북자율방범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4. 3. 6(목) 11:00
  - 장 소 : 성주 웨딩홀
  - 참 석 : 정영길 의원
  
- **안동시 『닭고기 소비촉진 무료시식행사』 참석**
  - 일 시 : 2014. 3. 6(목) 12:00
  - 장 소 : 안동의료원(병원 구내식당)
  - 참 석 : 김명호 의원
  
- **용암농협 농산물공판장 개장식 참석**
  - 일 시 : 2014. 3. 7(금) 10:30
  - 장 소 :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 참 석 : 정영길 의원

- **춘계 석전대제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3. 7(금) 11:00
  - 장 소 : 경주 자인향교
  - 참 석 : 윤성규 의원
  
- **의성군 정자 ‘조문정’ 현판식 참석**
  - 일 시 : 2014. 3. 7(금) 14:00
  - 장 소 : 금성산 고분군 사적지
  - 참 석 : 이왕식 의원
  
- **제4회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 참석**
  - 일 시 : 2014. 3. 8(토) 10:00
  - 장 소 :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옛날숨씨마을
  - 참 석 : 나기보·배수향 의원
  
- **고령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4. 3. 8(토) 11:00
  - 장 소 :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참 석 : 광광섭 의원
  
- **가흥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 기념식 및 리모델링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4. 3. 8(토) 11:00
  - 장 소 : 가흥종합사회복지관
  - 참 석 : 김종천 의원

- 2014년 상반기 평생교육 개강식
  - 일 시 : 2014. 3. 10(월) 10:00
  - 장 소 : 경산여성회관 강당
  - 참 석 : 서정숙 의원
  
- 새누리당-문경시 당정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4. 3. 10(월) 10:30
  - 장 소 : 문경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이시하·고우현·이경임 의원
  
- 울릉군민체육센터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14. 3. 10(월) 15:00
  - 장 소 : 울릉군민체육센터
  - 참 석 : 이용진 의원
  
- 예천군, 새누리당 당정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4. 3. 10(월) 16:00
  - 장 소 : 예천군청 회의실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 제4기 봉화농민사관학교 입학식 참석
  - 일 시 : 2014. 3. 11(화) 10:00
  - 장 소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 참 석 : 권영만 의원

- **성주군 봉계3리 마을회관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4. 3. 12(수) 11:00
  - 장 소 : 성주군 벽진면 봉계3리
  - 참 석 : 박기진 의원
  
- **2014 구미인동 3·1문화제 참석**
  - 일 시 : 2014. 3. 12(수) 14:00
  - 장 소 : 구미 진미동 주민센터
  - 참 석 : 김봉교·장영석 의원
  
- **진보노인교실 개강식 참석**
  - 일 시 : 2014. 3. 13(목) 10:30
  - 장 소 : 진보면사무소
  - 참 석 : 김영기 의원
  
- **2014 새마을운동활성화 다짐대회 참석**
  - 일 시 : 2014. 3. 14(금) 14:00
  - 장 소 : 영천시청소년수련관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제7회 청하면민의 날 및 2월 보름 달집태우기 한마당축제 참석**
  - 일 시 : 2014. 3. 15(토) 10:00
  - 장 소 : 포항시 월포해수욕장
  - 참 석 : 장세헌 의원

- 제18회 영주시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참석
  - 일 시 : 2014. 3. 16(일) 11:00
  - 장 소 : 영주시 국민체육센터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 제30회 3.18 호국정신문화제 참석
  - 일 시 : 2014. 3. 18(화) 11:00
  - 장 소 : 영해면 일원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건립추진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4. 3. 19(수) 14:00
  - 장 소 : 칠곡군청 강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 VI. 5분 자유발언

□ 2014년 4월 3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정영길 의원(농수산위원회) ◎

<<경상북도 도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안녕하십니까? 성주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 도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비소, 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되어, 세계보건기구(WHO)도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지정하여, 담배의 규제에 관한 기본 협약을 전 회원국이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에 이 협약에 비준하였기에 담배규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지난해 8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130만명의 국민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9년간의 질병발생을 추적·관찰한 것으로서, 연구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의 경우 후두암은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그리고, 여성의 경우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순으로 질병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흡연과 연관된 35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연간 1조 6,914억원이 추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국내의 담배회사에게 흡연관련 부담 진료비에 대해 우선 관련성이 입증된 폐암과 후두암에 대한 진료비 환수소송 제기를 공식화 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정작 연간 약 7천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회사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4년 46개 주정부가 집단소송을 하여, 내부고발과 담배회사의 거짓주장, 그리고 니코틴 조작이 밝혀지면서, 1998년에 260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캐나다의 경우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주(州) 예산으로 치료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주정부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각 사안마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역학적·통계적 방법으로도 소송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경상북도도 한 번 생각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의료급여대상자의 총 진료비가 4,054억원이나 지출되었고, 폐암과 후두암만으로 지출된 비용도 22억원이 넘습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은 국민행복에 커다란 장애로서,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국내의 담배회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 환수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적극 지지하면서, 우리 경상북도민의 건강과 도 재정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들에게 담배피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4년 4월 3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장세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교육환경 개선(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정책적 제언>>

포항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교육과 인재의 육성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좋은 환경의 교육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콩나물시루 교실’이란 말을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과거 한 교실에 50~60명이 넘는 학생들이 북적이며 수업을 받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 현재, 초등학교 학생수를 23.2명까지 낮추었으나, OECD 평균인 15.4명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도내 과밀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도 교육청의 학급당 인원 편성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수는 27개교에 692학급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며, 학급당 인원을 33명으로만 잡아도 도내에 무려 2만 3천여 명의 학생이 과밀학급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포항 양덕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 개교 당시 학생수는 23개 학급에 714명에 불과 하였으나, 2014년 현재, 46개 학급에 1천764명으로 2.5배 증가하였습니다.

도 교육청 기준인 학급당 30명을 적용할 때, 59개 학급이 되어야 하지만, 무려 13개 학급이 부족해 기준인원에서 10여 명이 더해진 40여 명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학생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교육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져, 교사들은 기준인원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봐야 하며, 미술실, 음악실 등 특별활동실도 교실로 바뀌었습니다.

운동장이 복잡해 마음 놓고 운동도 할 수 없는 지경이며, 급식 문제도 발생해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12시 20분에, 4학년부터 6학년은 13시 10분에 급식을 하는 등 성장기 아이들이 점심시간이 늦어져 배를 곯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과밀학급 전체가 이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수 증가에 비례하여 학교시설 또한 하루빨리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시설은 신설하지 않은 채 교실 수만 늘리다보니 운동장, 급식소, 특별활동실 부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적정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내 과밀학급 학생들은 ‘교육의 질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전문가들은 학생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을 학급당 25명 이하라 보고 있으며,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학급당 20명 이하일 때 학업성취도가 10% 이상 향상되는 등 학생수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본 의원은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학교 신축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하며,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열악한 환경과 불평등한 조건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 조례안 : 14건



## ■ 조 례 안

-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상북도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기본원칙)** ①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도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치법규 입법안은 도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 제 2 장 입법예고 등

**제 4 조(협의 등)** ①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실·국·본부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주관 실·국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장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 예고하여야 한다.

②주관 실·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예산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 실·국장에게 입법예고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입법예고 대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문은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 7 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방법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 8 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제5항을 준용하여 복사를 신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①도지사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의 개최와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 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제11조(전문) ①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조례의 전문에는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③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④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12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포번호) ①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포일 등) ①자치법규의 공포일은 도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장 도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

제15조(연서 도민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민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하여야 할 도민의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도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내에 국내거소 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도내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공탁 등)”을“(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을 “법 제7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9조(공탁 등)</b>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u>별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군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② ~ ③ (생략)</p>	<p><b>제19조(교부금전의 예탁)</b> ① ----- ----- 별 제72조에 따라 ----- ----- . &lt;단서 삭제&gt;</p> <p style="text-align: center;">② ~ ③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을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취득한 날”을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중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을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4호 중 “3천원”을 각각 “6천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 분	시	군
제1종	45,000원	27,000원
제2종	34,000원	18,000원
제3종	22,500원	12,000원
제4종	15,000원	9,000원
제5종	7,500원	4,500원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영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③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항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제3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 및”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로, “산출한 금액”을 “산출한 금액(법 제11조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세율) ① (생 략)</b>                      1. ~ 3. (생 략)                      4. 「<u>신탁법</u>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30. 다만, 영 제2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p> <p>5. ~ 6. (생 략)  <u>&lt;신 설&gt;</u></p> <p>②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선박                      가. ~ 다. (생 략)                      라. 「<u>신탁법</u>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30</p> <p>마. ~ 바. (생 략)                      2. ~ 6. (생 략)                      7. <u>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u> : 1천분의 20</p> <p>③ (생 략)                      1. ~ 2. (생 략)</p>	<p><b>제5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b>                      1. ~ 3.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p> <p>5. ~ 6. (현행과 같음)                      7. 제6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p> <p>②-----                      -----                      -----</p> <p>1. --                      가. ~ 다.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p> <p>마. ~ 바.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7. ----- <u>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u> : -----</p> <p>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제6조(신고 및 납부)</b>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u>취득한 날</u>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로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1. ~ 11. (생략)</p> <p>12. <u>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u></p> <p>13. ~ 15. (생략)</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등록면허세</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b></p> <p><b>제8조(세율)</b>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u>3천원</u> 미만일 때에는 <u>3천원</u>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2. ~ 3. (생략)</p> <p>4. 그 밖의 등기 : 건당 <u>3천원</u></p>	<p><b>제6조(신고 및 납부)</b> ① <u>취득한 날</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 <u>-----</u></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및 요트 회원권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 -----</u></p> <p>13. ~ 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절 -----</b></p> <p><b>제8조(세율) -----</b></p> <p>1. ----- -----<u>6천원</u>----- --- <u>6천원</u>-----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 <u>6천원</u></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b></p> <p><b>제10조(세율) ①</b>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시</th> <th>군</th> </tr> </thead> <tbody> <tr> <td>제1종</td> <td>30,000원</td> <td>18,000원</td> </tr> <tr> <td>제2종</td> <td>22,500원</td> <td>12,000원</td> </tr> <tr> <td>제3종</td> <td>15,000원</td> <td>8,000원</td> </tr> <tr> <td>제4종</td> <td>10,000원</td> <td>6,000원</td> </tr> <tr> <td>제5종</td> <td>5,000원</td> <td>3,000원</td> </tr> </tbody> </table>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b></p> <p><b>제27조(세율) ①</b> (생략)</p> <p>②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p> <p>〈신설〉</p>	구분	시	군	제1종	30,000원	18,000원	제2종	22,500원	12,000원	제3종	15,000원	8,000원	제4종	10,000원	6,000원	제5종	5,000원	3,000원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b> -----</p> <p><b>제10조(세율) ①</b>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시</th> <th>군</th> </tr> </thead> <tbody> <tr> <td>제1종</td> <td>45,000원</td> <td>27,000원</td> </tr> <tr> <td>제2종</td> <td>34,000원</td> <td>18,000원</td> </tr> <tr> <td>제3종</td> <td>22,500원</td> <td>12,000원</td> </tr> <tr> <td>제4종</td> <td>15,000원</td> <td>9,000원</td> </tr> <tr> <td>제5종</td> <td>7,500원</td> <td>4,500원</td> </tr> </tbody> </table>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절</b> -----</p> <p><b>제27조(세율) ①</b> (현행과 같음)</p> <p>②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영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p> <p>③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항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p>	구분	시	군	제1종	45,000원	27,000원	제2종	34,000원	18,000원	제3종	22,500원	12,000원	제4종	15,000원	9,000원	제5종	7,500원	4,500원
구분	시	군																																			
제1종	30,000원	18,000원																																			
제2종	22,500원	12,000원																																			
제3종	15,000원	8,000원																																			
제4종	10,000원	6,000원																																			
제5종	5,000원	3,000원																																			
구분	시	군																																			
제1종	45,000원	27,000원																																			
제2종	34,000원	18,000원																																			
제3종	22,500원	12,000원																																			
제4종	15,000원	9,000원																																			
제5종	7,500원	4,500원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지방교육세</b></p> <p><b>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b>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p> <p>1. 취득물건(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u>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u>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가. ~ 다. (생략)</p> <p>2. ~ 7.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b> -----</p> <p><b>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b> -----</p> <p>-----</p> <p>-----.</p> <p>1. 취득물건(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u>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 산출한 금액(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u>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 7.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도청이전에 따른 감면) 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이전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기관”이라 한다)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유관기관”이라 한다)를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해당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면제
2.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8을 적용하여 과세
3.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가. 농지 : 1천분의 2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30

②제1항의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예정지역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지역(예정지역외의 지역)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전일(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가.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전일

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

3. 제1항제3호에 의거 감면받은 토지에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할 때까지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소속 종사자로서 예정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 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제20조 중 “제96조”를 “제180조”로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 3 조(감면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6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b>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경감율에 추가하여 2013년 12월 31일 <u>까지</u>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신 설〉</p>	<p><b>제6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b>                      ① -----                      -----                      -----                      -----                      -----                      ----- 2014년 12월 31일                      까지 -----                      -----.</p> <p><b>제14조의3(도청이전에 따른 감면)</b>                      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이전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기관”이라 한다)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유관기관”이라 한다)를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해</p>

현행	개정안
	<p><u>당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u></p> <p>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면제</p> <p>2.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8을 적용하여 과세</p> <p>3.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p> <p>가. 농지 : 1천분의 20</p> <p>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30</p> <p><u>②제1항의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u></p>

현행	개정안
	<p>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예정지역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 퇴직,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지역(예정지역외의 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전일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p> <p>가.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전일 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p>

현행	개정안
	<p>3. 제1항제3호에 의거 감면받은 토지에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p> <p>④제1항에 따른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소속 종사자로서 예정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p>
<p>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 ----- ----- 제180조 -----.</p>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 4 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도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제 5 조(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고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초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

하여 구매실적이 제5조의 우선구매 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애인 구매를 늘리기 위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구매 확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기 별로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표 할 수 있다.

**제 7 조(우선구매 촉진)** ①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2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으로 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 계약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다.

**제 8 조(생산·판매시설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법」 제9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유통·판매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확보

- 3. 산·학 협력과 기술지원 사업
- 4.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 5.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전문가 교육 등

②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 9 조(우선구매 요청)** ①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체육시설, 공단,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각종 행사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9조제2항의 “환경해양산림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농수산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농축산국장, 환경산림국장”으로, “다음 각호의 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는 자로”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다음 각호의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은”으로 하고, 제1호의 “부시장·부군수”를 “부시장·부군수”로 한다.

제20조2의 단서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의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10. 기타”를 “12. 그 밖에”로 하며, 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임산부
- 11. 장기 기증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6조(관리사무소)</b> 도지사 및 <u>시</u> 장·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p>	<p><b>제6조(관리사무소)</b> <del>시</del> 장·군수는 <del>_____</del> <del>_____</del> <del>_____</del>.</p>
<p><b>제9조(조직) (생략)</b></p> <p>① (생략)</p> <p>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u>환경해양산림국장</u>으로 한다.</p> <p>③기획조정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안전행정국장, <u>농수산국장</u>, <u>환경해양 산림국장</u>, 건설도시방재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④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p> <p>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u>부시장</u>, <u>부군수</u></p> <p>2.~3. (생략)</p> <p>⑤ (생략)</p>	<p><b>제9조(조직) (현행과 같음)</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del>_____</del> <del>_____</del> <u>환경산림국장</u> <del>_____</del>.</p> <p>③<del>_____</del> <del>_____</del> <u>농축산국장, 환경산림국장</u> <del>_____</del> <del>_____</del></p> <p><del>_____</del> <u>다음 각 호의 사람</u> <del>_____</del> <u>위촉하는 사람으로</u> <del>_____</del>.</p> <p>④다음 각 호의 사람은 <del>_____</del> <del>_____</del>.</p> <p>1. <del>_____</del> <u>부</u> <u>시장· 부군수</u></p> <p>2.~3.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전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7. 기타”를 “9. 그 밖에”로 하며,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산부

8. 장기 기증자

제8조제2호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인정될 때”를 “인정할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7조(입장료 면제)</b>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 (신설)</p> <p>7. 기타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b>제7조(입장료 면제)</b> ----- -----<u>해당하는</u> 사람----- -----.</p> <p>1.~6. (현행과 같음)</p> <p>7. 임산부</p> <p>8. 장기 기증자</p> <p>9. 그 밖에 ----- -----.</p>
<p><b>제8조(시설사용료 면제)</b>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경상북도지사가 산림교육, 문화 행사 및 도내 산림생태·문화·관광 홍보 등을 위하여 <u>필요한 경우</u></p> <p>3.~5. (생략)</p>	<p><b>제8조(시설사용료 면제)</b>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p> <p style="text-align: right;">-----<u>필요하</u> <u>다</u>고 인정한 경우</p> <p>3.~5. (현행과 같음)</p>
<p><b>제10조(시설사용 제한)</b>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기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u>인정될 때</u></p> <p>② (생략)</p>	<p><b>제10조(시설사용 제한)</b> ①(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u>인정할 때</u></p> <p>②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경상북도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경상북도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孢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 자원을 말한다.

**제 3 조(명칭 및 위치)** ①경상북도 수목원의 명칭은 경상북도 수목원(이하 ‘수목원’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수목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수목원로 647번지 일원에 둔다.

**제 4 조(기능)**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향토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 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3.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체험학습의 지도
6. 국내·외 수목원간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7. 희귀, 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8.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 제작 및 수장관리
9.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0. 전시분원 조성 및 식재 수목유전자원 관리
11. 그 밖에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보존구역 설치)** 수목원내에 다음의 보존구역을 설치한다.

1. 수목원 비 조성구역 2,672ha
2.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서식처,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서식처 반경 500m 구역 내에서 수목원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향토 수목 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 6 조(개원 및 휴원)** ①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기상,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관리소장이 관람이 어렵거나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휴원을 인정하는 날짜
  3. 그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짜
- ②수목원은 제1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여 개방 지역내의 수목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다만, 수목원의 시설의 공사, 재해피해 복구, 전시시설의 보수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체의 시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관람 제한 사항과 그 대상 시설물은 관리소장이 정한다.
- ③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수목원 게시판이나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 7 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수목원 관람 및 입장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10:00부터 17: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10:00부터 16:00까지

②도지사는 수목원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수목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 9 조(시설의 임대)** ①도지사는 수목원 시설 중의 일부를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목원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재정법」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자전거, 이륜차,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3. 화기, 흉기 등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주류, 취사도구, 놀이기구를 소지한 사람
6.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7. 그밖에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입장 및 관람 금지에 관한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목원내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수목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란 행위 등으로 관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2. 음주행위, 금연구역 안에서의 흡연행위
3. 취사행위
4. 상업 또는 광고행위
5. 수목원내의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7. 수목에 대해 약품투여, 절제 등 손상을 주는 행위
8. 쓰레기 투기행위 및 낙서행위
9. 일체의 종교행위
10. 다른 관람객의 관람 또는 수목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시설물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제12조(변상조치)** 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의 ‘별표’에 따라 규정된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약용작물의 생산성 촉진을 위한 전략
4.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 인력육성 방안
5. 약용작물 연구개발 사업
6. 약용작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조(실태조사 등)** ①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5 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생산자 단체에게 약용작물의 생산·저장·가공·포장 및 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기술보급)**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작물 관련 교육·체험사업
4. 약용작물 관련 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과 관련하여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7 조(기술개발 등의 촉진)** ①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생산 관리)** ①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재배·생산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도지사는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경상북도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3. 약용작물 농업인·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국장,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 식품의약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회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촉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용작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도지사는 농업인·생산자 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 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 3 조(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도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원에 둔다.

**제 4 조(구성)** ①도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도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반과 기술정보반을 둔다.

③예찰방제반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기술정보반은 농업환경연구과장으로 하며, 병해충 진단 및 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제 5 조(도 예찰·방제단 운영)** ①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 우려 시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임무)** 도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상북도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 7 조(식물방제관)** ①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시·군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조(전문인력)** ①도지사는 예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 할 수 있다.

④인력채용시에는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채용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독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안용복재단”을 “독도재단”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안용복 등 울릉도”를 “울릉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년 바다교실”을 “청소년 바다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재단법인 안용복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도를 수호한 안용복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등 독도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설립)</b> 안용복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p> <p><b>제4조(사업)</b>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용복 등 울릉도·독도 관련 역사 인물 선양사업</li> <li>2. (생 략)</li> <li>3. 청소년 바다교실 및 청소년 독도탐방 지원 사업</li> <li>4. 동해 해양생태 연구지원 및 독도 주민지원사업</li> <li>5. 수탁사업의 연구</li> <li>6. ~ 7.(생 략)</li> </ol>	<p><u>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독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설립)</b> 독도재단</p> <p>_____</p> <p>_____.</p> <p><b>제4조(사업)</b> _____</p> <p>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울릉도</li> <li>_____</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청소년 바다학교</u></li> <li>_____</li> </ol> <p><b>&lt;삭 제&gt;</b></p> <p><b>&lt;삭 제&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 7.(현행과 같음)</li> </ol>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임신부
12. 장기 기증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b></p> <p>①(생 략)</p> <p>1.~10.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② (생략)</p>	<p><b>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b></p> <p>① (현행과 같음)</p> <p>1.~10. (현행과 같음)</p> <p><u>11. 임산부</u></p> <p><u>12. 장기 기증자</u></p> <p>②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교육감당선인”(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  
다) 제43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교육감당선인  
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경상북도교육감직”(이하 “교육감직”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 3 조(구성 등)** ①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  
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제 4 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 6 조(지원 등)** ①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백서발간)**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9 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4월 3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교육상”으로 한다.

제2조 중 “본 교육상은 스승으로서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현직 교육자에게”를 “본 경상북도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상부문 및 인원) 교육상의 수상자는 유아·특수교육 1명, 초등교육 2명, 중등교육 2명, 교육행정 1명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6명 이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상패)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제6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해당 과장”을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중 “해당할 경우는”을 “해당 할 경우는”으로, “행정처분 한다”를 “행정처분한다”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 (목적)</b>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상 _____ _____.</p>
<p><b>제2조(포상대상)</b> 본 교육상은 스승으로서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현직 교육자에게 수여한다.</p>	<p><b>제2조(포상대상)</b> 본 경상북도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_____.</p>
<p><b>제4조(포상 인원)</b> 교육상은 매년 1회 총 3명에 대하여 시상한다.</p>	<p><b>제4조(포상부문 및 인원)</b> 교육상의 수상자는 유아·특수교육 1명, 초등교육 2명, 중등교육 2명, 교육행정 1명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6명 이내로 한다.</p>
<p><b>제5조(상패 및 부상)</b>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만원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p>	<p><b>제5조(상패)</b>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p>
<p><b>제6조(수상후보자 추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지역교육청은 해당 지역교육청교육장</li> <li>2.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당 과장</li> <li>3. (생략)</li> </ol>	<p><b>제6조(수상후보자 추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_____ 교육지원청 _____ 교육지원청교육장</li> <li>2. _____ 해당 부서의 장</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b>제9조(시상의 취소)</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시상을 취소하고 행정처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적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때</li> <li>2. (생략)</li> <li>3. (생략)</li> </ol>	<p><b>제9조(시상의 취소)</b> _____ _____ 해당 할 경우는 _____ _____ 행정처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적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ol>

##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4년 3월 2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례안 제4조에서 포상대상 인원이 많은 부문에 인원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제안함.

### 2. 주요골자

- 안 제4조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4명”을 “유아·특수교육 1명, 초등교육 2명, 중등교육 2명, 교육행정 1명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6명”으로 수정함.

### 3. 참고사항 : 없음

##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4명”을 “유아·특수교육 1명, 초등교육 2명, 중등교육 2명, 교육행정 1명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6명”으로 수정함.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 4 조(포상 인원) 교육상은 매년 1회 총 3명에 대하여 시상한다.	제 4 조(포상부문 및 인원) 교육상의 수상자는 <u>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4명 이내로 한다.</u>	제 4 조(포상부문 및 인원) 교육상의 수상자는 <u>유아·특수교육 1명, 초등교육 2명, 중등교육 2명, 교육행정 1명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6명 이내로 한다.</u>